

제 10 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0.1 조 일반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 관계,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촉진하고 부속서 10-가에 따라 일시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 및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민권, 국적, 영구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일반적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10.1조에 따라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하도록 동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기업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으로 기업인이 입국하거나 그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 지연 또는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게는 비자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무효화, 지연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0.3 조 일시입국의 허용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10-가 및 부록 10-가-2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공중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과 같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2. 이 장에 따라 허용되는 일시입국은 그 일시입국을 허가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 법과 규정에 따라 직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대체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인의 일시입국이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인의 고용을 허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고용의 장소 또는 고용이 예정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노동분쟁의 해결, 또는

나. 그러한 분쟁에 관여된 인의 고용

4.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이 고용을 허가하는 입국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해당 기업인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다.
그리고

나.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5.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 신청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제한한다.

제 10.4 조 정보의 제공

1. 제18.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관련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요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그 요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공표하거나 달리 그 당사국의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입국서류를 발급받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 대해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을 허용한 것에 관한 자료를 자국 법에 따라 수집·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이 자료에는 각 직업, 직종 또는 활동 별 해당 자료도 포함된다.

제 10.5 조 10-2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과 접촉선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입국 작업반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이 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회합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 나.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해석의 개발 및 채택
 - 다.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 라.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

제 10.6 조 접촉선

1. 양 당사국은 제10.4조에 기술된 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제10.5조에 언급된 정보를 접수하고 분석하는 접촉선을 설치한다.
2. 접촉선은
 - 가. 한국의 경우,
조정자
출입국심사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또는 그 승계기관
 - 나. 콜롬비아의 경우,
조정자
비자 및 출입국 조정과
외교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 10.7 조 분쟁해결

1.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의 거절에 대해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해 이용가능한 행정적 구제절차들을 완료하였을 경우

2. 권한있는 당국이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나호에 언급된 구제조치들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8 조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장, 제1장(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19장(제도 규정), 제20장(분쟁해결) 및 제22장(최종규정)과 제18.1조(공표), 제18.2조(정보의 통지 및 제공) 및 제18.3조(행정절차)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해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¹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그 밖의 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나 약속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1. 제18장(투명성)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입국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을 요청하는 신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그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0.1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0.8 조의 “어떠한 의무”는 제 9.2 조(내국민 대우), 제 9.3 조(최혜국 대우) 및 제 9.4 조(시장 접근)를 포함한다.

기업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무역, 서비스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²을 말한다.

출입국 조치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칙, 규정, 결정, 절차 또는 그 밖의 모든 행정적 조치를 말한다.

국민은 제1장(최초 규정 및 일반적 정의)에 정의된 “국민”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반복된 관행이란 해당 관행의 집행 직전에 대표성이 있는 기간 동안 당사국의 출입국 당국에 의해 반복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관행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입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 거주 의도 없이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은 영주권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가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 1 절 상용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0-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서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시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10-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일시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나호에 언급된 사안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증명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제10.4조제1항나호에 기술된 설명자료에 그러한 증명의 비한정적인 예시 목록을 포함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2 절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감독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 활동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여야 한다.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나.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3 절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2. 기업 내 전근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고위급 임원·이사회 또는 회사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수행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의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해 독점적 지식을 보유한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4 절 계약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10-가-3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그 기업인이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그렇게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하는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적인 자격증명서의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2. 계약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의 기업인으로서 다음을 충족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할 것

나.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

다.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 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한편, 그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였을 것. 그 계약은 그러한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라. 승인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피고용인이었어야 할 것, 그리고

마. 다른 쪽 당사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할 것

3. 각 당사국은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 5 절 배우자 및 부양가족

1. 각 당사국은 제2절, 제3절, 또는 제4절에 따른 일시입국의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각각의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고용 자격을 충족하면 일시입국과 고용허가를 허용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 6 절 경영 연수생

1.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인에 의하여 적어도 1년간 고용되었고, 학사 학위를 소지하며, 회사 내 고위 간부직의 준비를 위해 피고용인의 회사³ 내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확대하도록 의도된 일시적 직무 과제를 맡고 있는, 직업 개발 중에 있는 경영 연수생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경영 연수생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각 출입국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경영연수생의 일시입국과 관련하여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테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 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로 한정된다.

부록 10-가-1
상용 방문자

다음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당사국의 기업인: 시장 · 기술 · 통계 및 과학 연구, 사업상 연락, 현장 방문, 회의 및 협의, 계약 협상, 수출입된 기계류의 설치 또는 보수, 세미나 또는 학회 참석, 상품이나 사람의 적재 및 운송, 그리고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목적.

부록 10-가-2 체류 기간

한국의 경우,

1. 부속서 10-가의 제1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10-가의 제2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10-가의 제3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10-가의 제4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부속서 10-가의 제6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경영 연수생은 1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6.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려는 콜롬비아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1. 부속서 10-가의 제1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10-가의 제2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10-가의 제3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입국의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10-가의 제4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계약 서비스 공급자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부속서 10-가의 제6절에 따라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경영 연수생은 1년까지의 체류 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6.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자를 받았으며, 비자기간보다 15일의 영업일을 초과하여 콜롬비아에서 체류하려는 한국의 기업인은 권한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부록 10-가-3
계약서비스 공급자⁴

- 1 컴퓨터 하드웨어⁵ 설계기술자
- 2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개발자
- 3 기록장치 개발자
- 4 하드디스크 개발자
- 5 콘트롤러 개발자
- 6 컴퓨터 기기 기술자
- 7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자
- 8 디스크드라이브 개발자
- 9 컴퓨터메인보드 개발자
- 10 입·출력장치 개발자
- 1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 1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 1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 1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 15 핸드폰회로 개발자
- 16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 17 인터폰 또는 전화기 개발자
- 18 DMB수신기 개발자
- 19 HFC망 운영 기술자
- 20 SMS장비 운용원
- 21 무선통신망 관리자
- 22 회선 관리자
- 23 교환기 개발자
- 24 광단국장치 개발자
- 25 VMS장비 개발자
- 26 RF통신연구 개발자
- 27 유선통신망 기획자
- 28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 29 인공위성TV수신기개발설계 기술자
- 30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 31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 32 전송기 개발자
- 33 무선전화기 개발자
- 34 디지털수신기 개발자
- 35 DMB폰 개발자

⁴ 이 목록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및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기초한다.

⁵ “컴퓨터 하드웨어”는 컴퓨터 칩, 회로기판, 컴퓨터 시스템 및 키보드, 모뎀 및 프린터와 같은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 36 ADSL 장비 개발자
- 37 VMS 장비 운용원
- 38 통신망운용 기술자
- 39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 40 통신공사 감리원
- 41 무선중계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 42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 43 CDMA기술연구 개발자
- 44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 45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 46 네트워크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 47 통신기기개발 설계 기술자
- 48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 49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 50 통신망 설계 기술자
- 51 정보통신 컨설턴트
- 5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 5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 54 네트워크 컨설턴트
- 55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 56 정보보안 컨설턴트
- 57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 58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 59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60 EMBEDDED프로그램 개발자
- 61 리눅스 개발자
- 62 MICOM제어 기술자
- 63 운영체제소프트웨어 개발자
- 64 FIRMWARE 개발자
- 65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 66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 67 그 외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68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 69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 70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 71 프로토콜 개발자
- 72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 73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 74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75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 76 네트워크 기술자
- 77 네트워크시스템분석가
- 78 인트라넷 기술자

- 79 LAN 기술자
- 80 VAN 기술자
- 81 WAN 기술자
- 82 네트워크서버구축운영 기술자
- 83 웹 마스터
- 84 웹 기술자 및 웹프로그래머
- 85 정보 시스템 운영자
- 86 일반 관리 컨설턴트⁶
- 87 재무 관리 컨설턴트
- 88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 89 인사 관리 컨설턴트⁷
- 90 생산 관리 컨설턴트
- 91 홍보 컨설턴트
- 92 송·배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 93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 94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 95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96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 97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 98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 99 항공기 기술자
- 100 디젤기계 기술자
- 101 가스터빈 기술자
- 102 항공기기계 기술자
- 103 인공위성 기술자
- 104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 105 환기장치 기술자
- 106 환풍기계 기술자
- 107 냉장기계 기술자
- 108 열 교환기 설계사
- 109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 110 GHP 개발자
- 111 열 교환기 개발자
- 112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 113 토공용 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 114 도로포장용 기계설계개발 기술자
- 115 운반용 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 116 쇄석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 설계개발 기술자
- 117 농업기계(설계) 기술자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분야와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⁷ 한국의 경우,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포함된 컨설팅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인노무사의 직무는 노사관계 및 급여계획에 관한 컨설팅을 포함한다.

- 118 광업용기계(설계) 기술자
- 119 섬유기계(설계) 기술자
- 120 식품기계(설계) 기술자
- 121 공작기계(설계) 기술자
- 122 유압기계(설계) 기술자
- 123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124 자동차 관련 특수엔지니어링 디자인서비스(자동차 설계사)
- 125 항공기 설계사
- 126 자동차기계 기술자
- 127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 128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 129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30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 131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 132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 133 화장품 및 비누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 134 천연가스화학 엔지니어
- 135 타이어생산 기술자
- 136 가솔린 기술자
- 137 천연 가스 생산·유통 기술자
- 138 양조생산 기술자
- 139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0 전기제품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 141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 142 전자장비 기술자
- 143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4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5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6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7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8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49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0 비행기 및 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151 조선 공학 기술자
- 152 탐사 기술자
- 153 석유 기술자
- 154 시장 및 여론 조사 관리자
- 155 조사 전문가
- 156 생물학자⁸
- 157 생화학자⁹

⁸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⁹ 박사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 158 건축 시공 기술자
- 159 토목 시공 기술자
- 160 광고 전문가
- 161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머
- 162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 163 건축사¹⁰

¹⁰ 한국의 경우, 건축 서비스는 한국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의 공동 계약 형태로의 공동 작업을 조건으로 한다.

부록 10-가-4
주요 출입국 조치

한국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 또는 만일 있는 경우, 이들을 수정하는 법 및 규정.

콜롬비아의 경우,

- 2004년 법령 제4000호, 2009년 법령 제2622호 그리고 2008년 결의안 제 5707호 및 2009년 결의안 제4700호, 또는 이들을 수정하는 법 및 규정.